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유로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동차의 운행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의3 제2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경우	법 제74조 제3항제6호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10억 원
바.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 제2항제2호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3	50억 원

별표 1의3 비교의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계산식
제2호가목	매출액=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하 이 비교에서 “시정조치계획”이라 한

	다)을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를 말한다]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제2호다목	매출액=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제2호라목	매출액=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로서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했을 때 판매되지 않았던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제2호마목	매출액=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제2호바목	매출액=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별표 1의3 비고의 제3호 중 “제2호마목”을 “제2호사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도목부터 푸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도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2	300
로.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4호	1,000
모. 법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5호	500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자동차의 운행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48